

#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 보고서
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1년 11월 24일 남구청장 제출

나. 회부 일자  
└ 1992.11.26 각 상임위원회 회부(운영, 총무, 사회산업, 도시위원회)  
└ 1992.12.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

다. 상정 일자

1992.11.30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(총무, 사회산업, 도시위원회)

제2차 회의 - 원안 상정

└ 1992.12. 1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

- 원안상정

└ 1992.12. 2 제18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

- 원안 상정

### 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재무과장 황경조)

가. 제안 이유

(세입, 세출 결산)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.

세출결산서를 통법시행령 제147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 
결산검사를 필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 
것임.

나. 주요 과자

( 세입 세출 결산 )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
세 입 예 산	64,273,114	61,600,793	2,672,321
세 출 예 산	64,273,114	61,600,793	2,672,321
이 월 예 산	7,793,600	7,793,600	0
불 용 예 산	5,290,535	5,212,901	77,634

- 세입예산액은 62,133,03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,140,076천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 총액 64,273,114천원에 대한 수납액 65,206,194천원이며,
- 세출예산액은 62,133,038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,140,076천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64,273,114천원에 대한 지출액 51,188,980천원이며.
- 집행잔액은 14,017,214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고.
-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, 사고이월,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,
  - 명시이월은 635,372천원
  - 사고이월은 7,158,228천원
  - 보조금 집행 잔액은 686,813천원 포함되어 있으며,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,536,802천원이됨.

-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○ 공유재산 764,861,624천원 | ○ 물품 1,681,663천원  |
| ○ 채권액 2,037,138천원    | ○ 채무액 2,159,792천원 |

### 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무상)

#### 가. 세입 세출 결산

##### 1) 결산 총괄

가) 세 입 - 64,273,114천원

0. 일반회계 : 61,600,793천원

[ 지방세 : 12,826,000천원  
세외수입 : 17,327,341천원  
지방교부세 : 12,042,000천원  
보조금 : 19,405,452천원 ]

0. 특별회계 : 2,672,452천원

[ 세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: 250,523천원  
의료보호기금 : 2,138,397천원  
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 : 303,401천원 ]

나) 세 출 - 64,273,114천원

0. 일반회계 : 61,600,793천원

0. 특별회계 : 2,672,321천원

##### 2) 재정 상태

0. 91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61,600,793천원중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 수입 30,153,341천원, 보조금, 조정교부금등 의존 수입 31,447,452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0.8%로 전년도 비해 0.8%로 증가된 추세이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며,
0. 국고또는 시비 지원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체 재원 확보는 물론 경영 수익 사업 발굴등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0. 91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51,189백만원은 기능별 분석하여 보면,

- 의회비 620백만원(1.3%)
- 일반행정비 13,051백만원(26.8%)
- 사회복지비 11,531백만원(23.7%)
- 산업경제비 1,767백만원(3.6%)
- 지역사회개발비 19,372백만원(39.9%)
- 문화및 체육비 434백만원(0.9%)
- 민방위비 1,108백만원(2.3%)
- 지원 및 기타 경비 711백만원(1.5%)으로 지출되었음.

### 3) 결산에 따른 지적 사항

0. 일반회계와 특별회계(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, 영세민 생활 안정 기금, 세마을 특별지원사업비)를 합산 총예산 규모로 65,206,193천원이며 이중 세출은 51,188,980천원이었음.
0. 그리고 91년 세입 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결정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원 관리로 문제가 있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안일한 자세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문제등은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임.
0. 지방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입 증대의 구체적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.
0. 그리고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향후 개선,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다시 지적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#### 4. 질의, 답변 묘지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 내용	답변 내용
이계일 위원	건설과장 정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연2동 7동, 22동 관매설 및 포장공사 금액이 25,775,000원이고,</li> <li>· 92.2.15일 축구 180m에 집수정 및 콘크리트 뚜껑 전횡이 없다 이것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한바 있는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축구 뚜껑은 철뚜껑으로 해두었다가 인근 주민이 악취가 난다고 하여 지금은 없애고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약 20m간격으로 집수정은 만들어 두었습니다.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우암1동 11동 하수관 매설 공사가 37,200,000원 들어하면서 하수관 공사는 U자형으로 해서 축구로 해야되는데 하수도 안으로 뚫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시정하라고 지적했는데도 아직 안된 이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금은 수도사업소가 생겨서 업무 연계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수 조사하여 수도본부에다 시켜놓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점점 시정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.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남구 관내 각종 공사가 예산은 집행하면서도 그것을 감시 감독 소홀로 부실 공사가 되고 있는데 방지하고 있는 이유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감사계에서 시정 조치중에서 있습니다.</li> <li>· 감사계에서 현장 조사하여 결과가 나오는데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.</li> </ul>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 내용	답변 내용
박남서 위원	기획감사실장 정석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환원되지요.</li> <li>· 왜 보조금 실행 예산을 못합니까?</li> <li>· 그 잔액을 가지고 부대공사를 왜 못합니까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, 반납됩니다.</li> <li>· 설계서 예산액보다 입찰액이 차이 남으로 남습니다.</li> <li>· 부대공사는 별도로 구비로 써 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.</li> </ul>
박수용 위원	건설과장 정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민락동 매립지 무허가 철거 관리비를 예비비 지출을 사전 승인 또는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도 양해 바랍니다 했는데 본위원회에서 답변하시고 자료를 한부 주시오.</li> <li>· 일용인부 회직금 부족금, 공무원 공사 치료비 추경으로 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한 이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비비 지출은 책정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집행함.</li> <li>승인은 사전 승인이 아니고 집행후 승인을 하는 것임.</li> <li>· 갑자기 회직이나 부상인원이 예상보다 많으므로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음</li> </ul>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비비 최고 한도액은 얼마입니까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90년말 기준으로 총액 잔액의 1%입니다.</li> <li>그 이후로는 법이 바뀌어 적당한 한도액은 됐음.</li> </ul>
박남서 위원	기획감사실장 정석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세마을 사업비 분산 승인 요청하는 이유</li> <li>· 방범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이유와 각동 방범대와 구성 실태 파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관 부서별로 요청을 받아 배정</li> <li>· 총무과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</li> </ul>
박남서 위원	의회사무국장 이영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회 차량 구입은 의회 예산이 편성되어 구입했는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구입하여 의회에 이관한 것인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회 업무용 차량 엘란트라는 의회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것.</li> </ul>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 내용	답변 내용
임종하 위원장 최홍래 위원	재무과장 황경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동 포괄사업 집행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결산 검사 의견서에 이를 결행하여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.</li> <li>· 동 포괄사업 중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포장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얕게 포장된데 대한 시정 및 조치 결과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적된 사항중 대부분이 즉구 뚜껑이 낡은 것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인데 몇개동에서 새것으로 교체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음.</li> <li>· 소관 부서 건설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답변하겠다음 (임종하 위원 동의)</li> </ul>
최경익 위원	기획감사실장 정석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사후 보강 또는 조치할 것인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주관부서에 통보만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은밀히 재차 확인을 해서 문책 사항은 문책하고 번상해야 될 것은 번상조치하겠음.</li> </ul>
손원의 강정화 최홍래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출금액대비표에 나항, 예산규모에는 구예산 비율이 21%이고 4번항 검토의전에는 30%가 넘는 데 맞지 않은 이유 설명 요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면 답변 구예산 각종 사회산업소관 예산 비율이 21%로 4번항 검토의전에서는 30%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과목중 관항에 속하는 항목을 검토 보고에 기재하지 않고 예산 과목항에 속하는 생활보호, 가정 복지, 환경위생관리부분이 더 포함되었음.</li> </ul>
박병화 최홍래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용액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명시이월, 사고 이월 현황에 대해서 합계 (집계) 요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용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. 명시이월 5건 170,121천원 사고이월 3건 342,147천원 총액 8건에 512,268천원</li> </ul>

질의위원	답변 공부원	질의 내용	답변 내용
박병화 최홍래 위원	기획감사실장 정석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결산검사의견서증에서 사고이월 소홀, 명시이월 소홀, 예비비 지출 소홀이 있는데, 이 가운데 상당 부분 사회산업국 업무가 포함돼 있는지.</li> <li>· 결산서에 보전소 환경 개선 및 예산 지원 강화에 대하여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포함돼 있습니다.</li> </ul>
이인곤 최홍래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산업국에도 시비나 국고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불용액인지 구비가 불용액인지 설명 요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산업국 소관 불용액 872,575천원 내역은, 국비 207,448천원 시비 300,019천원 구비 365,108천원</li> </ul>
차인규 위원	전문위원 노영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쓰도록 되어 있음.</li> </ul>
"	도시국장 박종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비비 지출 민락동 매립지 무허가 시설 철거 관리 3,698만 4천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 소상히 설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시국에서는 사업 집행만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승인 또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자료를 찾아 답변하겠습니다.</li> </ul>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 내용	답변 내용
정환도 위원	도시국장 박종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시국 제출 세입세출결산 개요 유인물과 전문위원 제출 검토 보고와의 수치가 틀리는 점 설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료 취합 과정에서 잘못 했을 교통 행정 관리, 도시 관리, 도시정비 항목의 수치가 이중 들어있어 다시 조정한 결과 수치가 맞음.</li> <li>금년부터 국단위로 결산을 하게되어 수치에 착오가 났으며 양해를 바람.</li> </ul>
차인규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비비 지출에 대해서</li> <li>- 추경에 반영시켜도 좋은 것을 왜 예비비로 썼는지</li> <li>- 예비비 지출은 의회승인을 받았는지 여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120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세입.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91년도 집행한 것을 이번 회기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</li> </ul>
이기광 위원	전문위원 노영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결산서 214페이지에는 예비비 지출 운영 행위가 많은데 188페이지에는 하나도 없고 이것은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과목 변경한 것인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비비 지출은 그 항목에 도시국내 소관과에서 지출한 다음 다음 회계년도에 승인을 받음.</li> </ul>
차인규 위원 이기광 위원	도시국장 박종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결산서 217페이지 승인 관계에 대해 설명 (일자, 누가)</li> <li>지출 일자, 승인 일자에 대해 설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17페이지 승인 일자는 의회 승인이 아니고 내부 적인 집행기관장의 승인 날짜로 구청장 승인임.</li> </ul>
김봉곤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결산서 총예산액에서 지출하고 이월된 불용액이 예산현액과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산과목에 항목에 맞는 사업을 넣다보니 총무국에서도 지역개발비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빼면 이 금액이 나옴.</li> </ul>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 내용	답변 내용
김봉곤 위원	도시국장 박종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산과목을 임의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내부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을 위해 목간 전용을 하고 있으며 거의가 목간 전용임.</li> <li>덧붙여 설명하면 예산 편성에 보상비, 도로개설 비등에 집행할때에 서로 차이가 날 시에는 서로 조정하여 쓰도록 규정되어 있음.</li> </ul>
배영일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예산전용은 부득이 하기 때문에 과목 변경하여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면으로 제출하겠음.</li> <li>· 12월초에 6건이 해결될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실 것.</li> </ul>
박명수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용호농장 위험 응벽 보강 공사건은 누가 담당하느냐</li> <li>· 또,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고 사고이월된 사유가 유인물상 부족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</li> <li>· 광안리 TSM사업건에 대해서 예산은 중앙정부 시에서 전액을 받아 시행을 해야지 적은 남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회산업국 지역 경제과에서 공사, 집행,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 양해</li> <li>· 용호농장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과에 통보를 하여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협조 요청</li> <li>· 광안리 가각정비, 토지 매입비, 시설 부대공사비 이것은 전액 시비로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것에 대해 가급적 이면 시에 보고를 하여 가능한한 시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/li> </ul>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 내용	답변 내용
박남서 위원	도시국장 박종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광안리 입구 가각정비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중 구비로 5,200만원이나 충당한 것은 잘못되었는데 부족분은 시예산을 요청해야하는데 대한 답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에서 1,700만원 지원을 다시 받았는데 TSM사업비는 시비로 일반회계로 들어와 우리 예산 편성시키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은 전도자금으로서 예산에 편성을 시키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하며 TSM사업비는 전액 시비임.</li> </ul>
차인규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용액 주택사업, 주요 사업비, 용역비 2,958만 2천원에 대한 집행 미사유에 대해 설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옹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용역비를 편성했는데, 옹호동 주민들과의 동의가 안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집행을 못하여 사업이 미집행되었으며 용역비는 사업계획을 수립키 위해 하는 전체 소규모 개발 기본 설계비임.</li> </ul>
박남서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용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많으며 예비비 또한 많다고 보며 이것은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지 않았나 하는데 건해는?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용액은 공사 입찰시 20% 까지 남는 것이 있고 집행 후 12-13%까지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 연도에 세제잉여금으로 쓰도록 방침이 되어 있으며,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도시계획사업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 감정법이 바뀌어 주민간의 협의 보상 기일이 걸리며 조정이 안 될 시는 재결기간이 5.6 개월 걸리는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많음.</li> <li>93년부터는 예비비 지출을 절차에 맞도록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</li> </ul>

질의위원	답변 공무원	질의 내용	답변 내용
김봉곤 위원	도시국장 박종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고이월 대연2동 성민약국 - 대연 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과 대연2동 신정시장 - 신연국교간 개설공사가 지연된 사유</li> <li>· 부산공고 - 우암로간 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된 사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집행을 할때 도면에 의해 축량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적 공사에서 축량을 해주기 않기 때문에 건설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음.</li> <li>· 보상물건 79건중 현재 13건이 남아 있는데 그 지역엔 영세민들이 많으며 거의 남의 사유지 또는 그거부지에 건물을 짓어 사는 사람이 많은데 보상금액이 적어 특별한 이주 대책없어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.</li> </ul>
박명수 위원	"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용호2동 주거환경 개선등으로 체부부담행위가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집행이 안되어 많은 이자를 물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 설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91년도 결산에서는 체부부담 행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잘 알아보아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음.</li> </ul>

4. 토론 요지 : 없음

5. 심사 결과 : 원안 승인 의결

6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